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6.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312,370원, 농어촌특별세 2,231,230원, 등록세 8,924,940원, 지방교육세 1,680,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8

가. 원고는 2009. 8.경 [redacted]시 B,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 12. 31. 경기도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본문 제2호에 따라 2009.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 단서에 따라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나.항과 같이 감경해 준 취득세 22,312,370원, 농어촌특별세 2,231,230원, 등록세 8,924,940원, 지방교육세 1,680,750원을 각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건물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용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 단서가 추징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8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9.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그 무렵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1.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D에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D은 위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주식회사 E'라는 명칭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 단서가 추징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 단서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인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8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정경희

판사 이승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8

관계 법령

□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 12. 31. 경기도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